의 안 번호 997

[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]

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3. 07. 01.(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7. 02.(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7. 19.(금)

2. 제정이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11조)

다.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20조)

라. 수당, 운영세칙(안 제21조 ~ 제22조)

4. 관련법령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 및 제31조

5. 검토의견

-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 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인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운영세칙 등을 검토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